

##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 성별 차등 보험료산정 금지의 영향

-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3월1일 성별을 차등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온 관습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 금번 판결은 ‘남성의 사망보험료가 여성보다 높은 것은 성차별’이라는 소송에서 출발하였으며 ECJ는 3월1일 소송의 이유가 있다고 최종 판결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성별 차등 보험료 관행을 폐지하게 됨.
  - 보험회사는 성별 차등은 정확한 계리·통계에 근거하여 위험이 차별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ECJ는 장수·운전습관은 통계적으로 성별과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성별 차등 보험료산정은 EU의 기본법 제21항·제23항의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유로지역의 보험회사는 금번 판결로 젊은 남성 운전자 층에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보위험을 차등화 시켜주는 새로운 변별요인 개발과 이에 따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들은 그간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높은 여성의 사망보험료를 낮게 산정해왔으며 자동차사고율이 높은 젊은 남성의 자동차 보험료를 같은 연령대의 여성보다 높게 산정해 옴.
  - 영국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에서 성별 차등이 금지될 경우 젊은 남성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겠지만 여성의 자동차 보험료는 25% 상승하겠고, 사망보험에서는 남성의 보험료는 하락하고 여성의 보험료가 상승하겠으나 상·하락폭은 자동차 보험료 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 새로운 담보위험 변별요인으로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습관을 관찰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데이터 등이 거론됨.
- 한편, 미국은 유럽과 달리 성차별 금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2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성별 차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15년 전 도입된 신용상태 차등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성별의 중요성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Wall Street Journal 3/2, 3/1)